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4. 11.

제 안 자 : 국토교통위원장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중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부담금 부과가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기
위해 자구를 수정함(안 부칙 제2조).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 제2조제1호 중 “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승인·변경승인 및”을 “제29조에 따라”로 하고, 부칙 같은 조 제2호 중 “및”을 “또는”으로 하며, 부칙 같은 조 제3호 중 “수립(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)·승인(변경승인을 포함한다) 및 고시된”을 “고시된”으로 하고, 부칙 같은 조 제4호 중 “변경승인되거나”를 “변경승인되어 고시되거나”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부칙	부칙
	제2조(존치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제2조(존치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	1. 이 법 시행 전에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승인·변경승인 및 고시된 실	1. ----- -제29조에 따라----- -----

	<u>시계획</u>	
2. 이 법 시행 전에	제 52 조 의 2 에	2. -----
따라 승인 및	변경승인된 재	-----
정비시행계획		----- <u>또</u>
		<u>는</u> -----

3. 이 법 시행 전에	제 59 조 의 2 에	3. -----
따라 준용되는	「산업단지 인	-----
· 허가 절차	간소화를 위한	-----
특례법」에 따	라 수립(변경	-----
된 경우를 포	함한다) · 승인	-----
(변경승인을	포함한다) 및	--- <u>고시된</u> ---
고시된 물류단	지계획	-----
4. 제1호부터 제3호	까지의 규정에	4. -----
따른 계획이	이 법 시행 이	-----
후 변경승인되		-----
		--- <u>변경승인되</u>

	<u>거나 수립이</u> <u>변경되어 고시</u> <u>된 경우(제2호</u> <u>에 따른 재정</u> <u>비시행계획의</u> <u>경우에는 변경</u> <u>승인된 경우를</u> <u>말한다) 그 변</u> <u>경된 계획</u>	<u>어 고시되거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--	--	--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2276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4. 7. 26.

제 출 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중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부담금 부과가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함(안 부칙 제2조).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4조(공공시설의 설치 등)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, 공원, 녹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존치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따라 존치하게 되는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제44조(제52조의2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1.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
2. 이 법 시행 전에 제52조의2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된 재정비 시행계획

3. 이 법 시행 전에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고시된 물류단지계획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이 이 법 시행 이후 변경승인되어 고시되거나 수립이 변경되어 고시된 경우(제2호에 따른 재정비시행계획의 경우에는 변경승인된 경우를 말한다) 그 변경된 계획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44조(시설부담금) ①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, 공원, 녹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.</u> <u>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42조에 따른 준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u> <u>③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, 징수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	<u>제44조(공공시설의 설치 등)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, 공원, 녹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.</u>